

「KB 국민재형저축 고정금리형」특약

제 1 조 약관의 적용

이 특약은 고객과 국민은행(이하 "은행"이라고 한다)과의 「KB 국민재형저축 고정금리형」(이하 "이 예금"이라고 한다) 거래에 적용하며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령,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적립식예금약관을 적용합니다.

제 2 조 예금과목

이 예금은 적립식예금으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.

제 3 조 가입대상

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.

- 1.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 천만원 이하인 고객으로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.
- 2. 1 호에 해당하지 않는 고객으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 천 500 만원 이하인 고객

제 4 조 저축방법 및 가입한도

- ① 이 예금은 분기 300 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 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습니다. 단, 가입한도는 모든 금융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한도입니다.
- ② 은행은 세금우대저축한도집중기관을 통하여 고객의 저축 가입 가능 한도를 조회·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제 5 조 계약기간

- ① 이 예금의 계약기간은 7년으로 합니다.
- ② 만기일 1 영업일이전까지 신청하는 경우 1 회에 한하여 3 년 이내의 범위에서 1 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.

제 6 조 세율의 적용

이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<u>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</u>가 부과되지 않습니다.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- 1. 이 약관 제 3 조 각 호의 가입자격, 제 4 조 제 1 항의 분기 가입한도, 제 5 조의 계약기간, 제 8 조 제 1 항의 소득확인증명서 제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됩니다.
- 2. 이 예금의 만기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됩니다.



제 7 조 중도해지와 세율의 적용

- ① 이 예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이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됩니다.
 - 1.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경우: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
 - 가. 제 3 조 제 1 호에 해당하는 거주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 천 500 만원 이하인 고객
 - 나. 제 3 조 제 2 호에 해당하는 거주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1 천 600 만원 이하인 고객
 - 다. 제 3 조에 해당하는 거주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에 따른 중소기업(비영리법인을 포함하며,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27 조 제 3 항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한다.)에 근무하고 있으며 예금 가입일 현재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로 연령이 15 세이상 29 세 이하인 고객(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27 조 제 1 항 제 1 호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6 년을 한도로 그 기간을 재형저축 가입일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을 말합니다.)
 - 2. 제 3 조에 해당하는 거주자로서 제 1 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: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
- ② 위 1 항에도 불구하고 저축자의 사망, 해외이주 또는 해지 전 6 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제출하고 특별해지 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.
 - 1. 천재·지변 2. 저축자의 퇴직 3. 사업장의 폐업
 - 4.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·질병의 발생
 - 5.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, 영업인가·허가의 취소,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

제 8 조 가입자격의 검증

- ① 예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은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소득확인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야 합니다.
- ② 이 예금에 가입하는 고객이 제 7 조 제 1 항 제 1 호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「청년층 재형저축 가입요건 확인서」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③ 은행은 고객이 은행에 제출한 「소득확인증명서」 및 「청년층 재형저축 가입요건 확인서」에 기재된 내용이 제 3 조 및 제 7 조 제 1 항 제 1 호 각 목의 가입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가입 처리합니다.
- ④ 제 3 항의 은행의 가입자격 확인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고객이 제 3 조 및 제 7 조 제 1 항 제 1 호 각 목의 가입조건에 해당하는지 검증하여 그 결과를 고객이 가입한 연도의 다음 연도 2 월 말일까 지 은행에 통지합니다.
- ①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검증절차에서 부적격으로 판정되어 은행에 그 사실이 통지된 경우 그통지된 날을 기준으로 이 예금은 해지된 것으로 보아 추가 입금과 이자의 제공이 중단됩니다.



⑥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이 예금을 해지하는 경우 은행에 그 사실이 통지된 날의 전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서는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으며,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하는 제 12 조에도 불구하고 제 11 조에서 정한 이자율을 적용합니다.

제 9 조 가입자격 부적격 판정 통보 및 의견제시

- ① 은행은 국세청으로부터 고객이 이 예금에 대한 가입 자격이 부적격 하다고 통보를 받을 경우 이를 받은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고객에게 우편과 휴대전화 단문자(또는 전자우편)의 방법으로 알립니다.
- ② 고객은 국세청으로부터 통보 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은행이 통보 받은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 사실을 은행에 알려야 합니다.
- ③ 위 2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사망, 해외장기출장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.
- ④ 국세청은 위 2 항과 3 항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의견을 제시 받은 경우 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은행에 그 수용 여부를 통보하며, 고객의 이의가 수용되어 가입 자격이 적격으로 다시 판정되고 국세청이 이를 은행에 통보한 경우 은행은 제 8 조 제 5 항에 의거하여 중단된 입금이 다시 가능하도록 즉시 조치합니다.

제 10 조 제한사항

- ① 이 예금은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.
- ② 이 예금은 계좌분할 및 일부 해지 할 수 없습니다.
- ③ 이 예금은 다른 상품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.
- ④ 이 약관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시행령, 시행규칙의 변경 시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. 다만 은행은 그 변경 사항을 즉시 약관에 반영하고 이를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21 조 제 1 항 및 제 2 항에서 정하는 게시 또는 공고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알립니다.

제 11 조 이자율의 적용

신규 당일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이율을 신규일로부터 7년간 적용하고, 만기를 연장한 경우 최초 만기일부터 연장된 만기일까지는 최초 만기일 현재 영업점에 고시한 이율을 연장된 만기일까지 적용하여 해지시 원금과 약정한 이자를 지급합니다.



제 12 조 중도해지이율

① 이 예금을 <u>신규일로부터 5년 미만 경과 후</u> 지급청구 할 때에는 신규일로부터 지급일 전일 까지 기간에 대해 아래의 중도해지이율로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.

(단위: 연%, 세금공제전)

입금 건별 예치기간	중도해지이율
1 개월미만	0.1
1 개월이상 ~ 3 개월미만	기본이율 X 50% X 경과월수/60(단, 최저금리는 0.3)
3개월이상 ~ 3년미만	기본이율 X 50% X 경과월수/60(단, 최저금리는 0.5)
3년이상 ~ 5년미만	기본이율 X 50% X 경과월수/60(단, 최저금리는 1.0)

- 1. 기본이율 :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된 이율 (우대이율 제외)
- 2. 경과월수 : 입금일 다음날로부터 해지월 입금해당일까지를 월수로 하고, 1개월 미만은 절상 ※ 경과월수는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
- 3. 이율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시(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)
 - ② 이 예금을 <u>신규일로부터 5 년 이상 경과하고</u> <u>만기일 이전에</u> 지급청구하거나 <u>제 7 조 2 항에</u> 의해 특별해지를 하는 경우 신규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해 제 11 조에서 정한 이율로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.
 - 단, 제 7 조 제 1 항 제 1 호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신규일로부터 3 년 이상 경과하고 만기일 이전에 지급청구하는 경우 제 11 조에서 정한 이율로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.
 - ③ 이 예금이 <u>국세청으로부터 부적격 통지를 받아 지급청구를 할 때에는</u> 신규일로부터 은행이 부적격통지를 받은 날의 전일까지 기간에 대해 제 11 조에서 정한 이율로 셈함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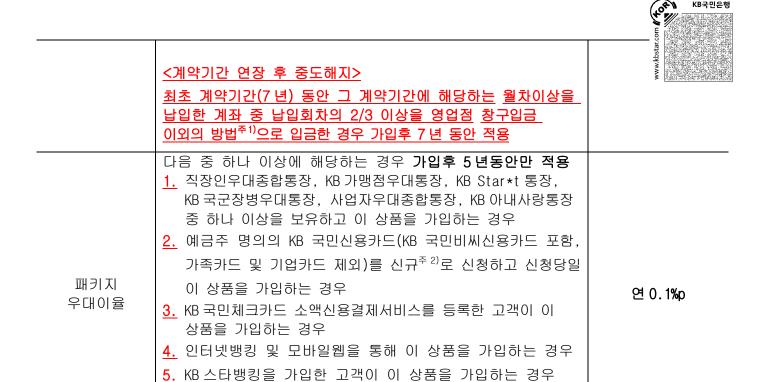
제 13 조 만기후이율

이 예금을 만기일 이후에 지급청구 할 때에는 만기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만기일 당시 영업점에 고시한 만기후이율로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.

제 14 조 우대이율

이 예금은 <u>신규일로부터 7년 이상 경과하여 해지하고</u> 아래의 각 우대이율 항목에 해당하는 제공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대이율을 적용합니다.

구 분	제공 조건 및 기간	우대이율
자동이체 우대이율	○만기해지〉 1. 계약기간(이 약관 제 5 조 제 2 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는 그 연장한 기간 포함)에 해당하는 월차이상을 납입한 계좌 중 납입회차의 2/3 이상을 영업점 창구입금이외의 방법 ^{주 1)} 으로 입금하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 적용 2. 제 5 조 제 2 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 전체계약기간 기준으로 제 1 호에서 정한 제공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, 최초 계약기간(7년) 기준으로 해당 조건을 충족한때에는 가입후 7년 동안 적용	연 0.2%p



주 1) 계좌이체, 자동화기기, 인터넷뱅킹, 모바일뱅킹, 폰뱅킹, KB 스타뱅킹 등

가입하는 경우

부 칙

6. KB 국민은행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하고 이 상품을

이 약관은 2015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 다만, 제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2015년 3월 30일 이후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약관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약관은 2020년 3월 16일부터 적용한다.

주 2) 신청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KB 국민신용카드 및 KB 국민비씨신용카드가 없는 경우